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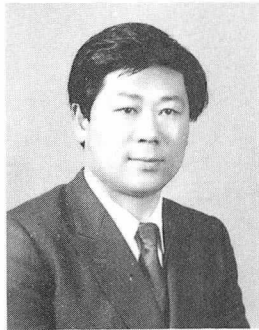
도시방재를 위한 종합적인 조정기구 필요

1. 머리말

도시방재란 대도시에 잠재하고 있는 재해요인을 방재차원으로 접근해 안전도를 최대로 고려한 쾌적한 환경의 창출과 함께 도시 정비를 실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대도시, 그것도 도심지의 안전성이란 환경과 인간과의 인공적인 균형있는 관계속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방재 차원에서는 여러가지 방향에서의 접근방법이 있으나 시가지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경우에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복잡한 현실문제를 만나게 된다. 생명의 안전이라는 차원만 가지고 모든 점에 초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도시방재란 긴급을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점은 생명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



김영하
(단국대학교수·공박)

은 인공물을 통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생명과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생활환경이란 인간, 다시말해서 자기자신과 자신을 형성하고 있는 인적구성요인, 인공적인 요소로써 자연속에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 사람과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룩된 환경이라는 3가지 기본적 요소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결국은 생활환경이란 자연에 대해서 인구라던지 인공물이 점유하는 비율에 따라 환경은 변화하게 되는 것이며, 그속에서도 안전에 대한 설정여부가 환경의 기능을 좌우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시방재의 대책으로서 예방적 재개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거대한 규모의 재개발이라든가 광역피난계획과 같은 도시전체차원에서의 대규모 대책이 아닌, 지구수복이라든가 지구개선 정도의 소규모 정비방안에 대한 대응관계를 뜻한다.

2. 도시방재를 위한 정비구상

방재대책에 있어서 시가지의 정비구상은 일반생활 개념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념정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가. 도시구상에 의한 도시방재

도시구조적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방재정비란 주변환경의 정비개념에서 출발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따라서 생활패턴의 일환에서 발상의 전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방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방재대책을 보강해 나가야 한다.

도시구조상에 있어서의 방재개념은 결국 안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며 긴급시에는 어떠한 대응방안과 안전성의 확보를 수립해야 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행정 및 물적정비 측면에서 서로간의 상관관계를 배려한다면 시가지의 구성수법은 단계적차원에서 향상된 방재구성을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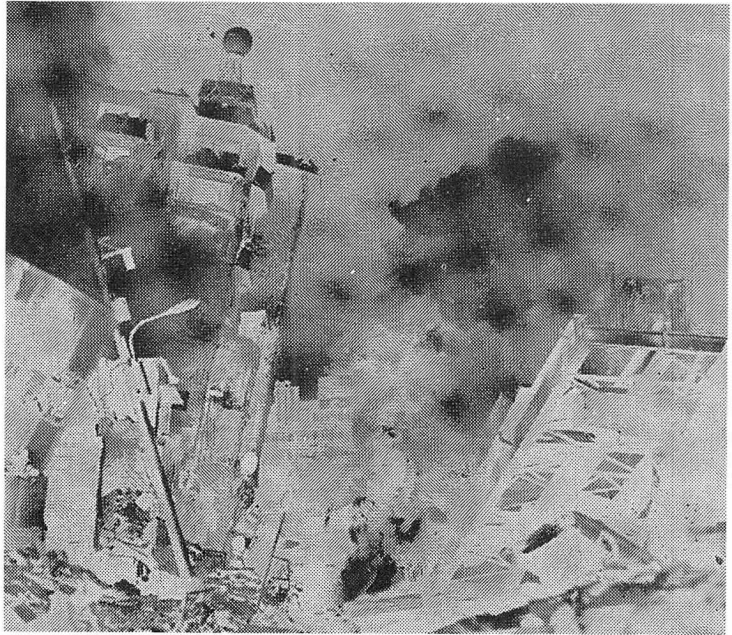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상에서 사업활동이 전개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차원에서는 ① 도시구조상의 맥락에서 현황을 파악하여 방재에 대한 정비구상을 수립한다. 화재 등의 재난에 대한 대비로써 소방이나 소화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방재시설의 정비라든가 도로정비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또는 피난대책으로써의 공간 확보와 녹지를 이용한 방재공원 등도 고려할 수 있겠으며 방재대책센터, 방재기지건설 모델지구, 소방센터 등을 열거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을 정비한다면 방재훈련을 충실하게 시행함으로써 방재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역차원으로는 ① 재해에 대한 위험지역을 파악하며 위험성여부를 조사분석 함으로써 정비의 주체를 검토한다.

② 도시의 정비에서는 바람직한



용도설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구차원에는 ① 주변환경의 여건과 시민의식에 입각한 방재대책을 설정한다.

② 지구정비촉진으로는 중점정비구역이나 사업화구역 그리고 유도 또는 규제구역 등의 설정이 선행됨으로 해서 환경정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나. 화재의 분석과 문제점

대형탱크나 영업용 및 가정용 가스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심통로를 제한하며 통행허가를 받아도 자격있는 안전요원을 동승시키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문제는 남대문 시장의 화재에서 처럼 부탄가스 등 소형 고압가스연료통 취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적 규제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소형가스통은 얇은 알루미늄캔으로 되어있어 이음새와 연결부위가 약해 수송시 충격으

로 인한 폭발위험성이 대형용기보다 훨씬 높는데도 이를 다량으로 실은 트럭이 도심을 자유자재로 통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시정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폭 6m 미만의 도로나 좌판판대 시설이 도로좌우 및 중심부까지 점유, 밀집하고 있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시 차량 진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끔 된다. 따라서 시장의 경우 소방도로의 확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3. 도시방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도시재해는 일반적인 재해요인과 우연한 돌발사고에 의한 대형화재라든가 폭발사고 등의 사회적인 재해로 대변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도시재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공업화의 물결과 더불어

복잡한 도시구조에도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재해라는 것은 역사적 소산물이라는 맥락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다.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강의 역할이라든가 산이나 지형의 위치 또는 도로의 형성 등에 의한 도시공간은 도시방재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나. 방재정보체계

대재해나 천재지변시엔 위험지역으로 부터 모든 인간의 긴급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게된다.

시민입장에서 볼 때 재해에 대한 정보는 자기자신의 생명에 관한 안전은 물론, 가정에 대한 안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의 정보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전달방법으로서 인체의 각 부위를 활용한다던가 기계장치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예를 든다면, 유선방식 또는 무선활용방식이나 수신호에 의한 신호방식을 들 수 있다.

둘째, 관계기관에 의한 정보수집 방식으로서 조직체계를 통한 단계적인 방법과 헬리콥터나 항공기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셋째, 연락체계의 조직으로, 시민소방단 성격의 조직을 구성해 정보제공이나 유사시 이들이 피난유도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교육·운영해 간다. 이를 통해 피해액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다.

다. 도시방재의 정비대책

도시에 있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정비란 어떠한 단위권으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다.

하나의 가설로서는 「방재생활권」으로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의 규모로서 시가지를 설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지역성격에 따라서는 도로폭과 연장선상에서 구분할 수 있겠고, 하천이라든가 연도 또는 녹지대나 공원의 정비로서도 가능하며 내화성을 가진 건축의 군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물적공간만으로 방재대책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화재시의 방재활동에 대한 홍보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일반시민들의 활동영역에 따라서는 행정력과 일체가 되어 재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가족이나 근린단위의 연락체계를 확인한다든지, 방화수나 모래 등을 비축해 놓는 것도 방재대책면에서는 좋은 훈련이 되리라 본다.

도시방재에 따른 조직체로서는 실제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각 기관과의 연계는 물론 시민에 대한 피난이라든가 정보경로에 따른 PR 등을 통한 지식보급과 훈련실시가 초기소화나 재해에 좋은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물적 준비상황면에서는 무선기의 비치, 방화저수조의 적정량 보유, 소화기의 충실한 비치, 화기 사용기구의 안전의무 이행, 피난장소 및 공지의 녹지 확보, 가로정비, 위험물관리, 지역내의 재개발 등으로 방재에 대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폭넓은 홍보가 함께

따라야 한다.

4. 맺는 글

현재 도시방재에 활용될 수 있는 소방력이나 방재시설의 운영에는 지구정비와 관리체계의 준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도로폭의 협소로 인해 교통소통이 잘 안될 경우 가동성의 약화내지는 장래로 소방력이 저하된다.

둘째, 도시계획으로는 내구성 건물과 건물간의 연동거리 확보와 피난광장이나 공원, 녹지 등의 오픈 스페이스와 가로망 정비 등으로 도심방재에 대비한 대책을 들 수 있다.

셋째, 행정기관과 주민이 방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행정체계의 내부협력관계에는 일치하고 있으나, 방재계획에 있어서의 입안이나 실행기구와의 위상관계는 불분명하다.

넷째, 화재나 재해발생후 피해액에 대한 산출 근거가 애매하다. 즉, 경찰관서의 피해 추정액과 소방관서의 피해금액산정이 다르며, 피해를 입은 개인이 주장하는 피해손실금액과 보험회사의 손실평가액이 제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평가방법으로는 정확한 피해액의 발표나 주장에 객관적인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공정한 피해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

다섯째, 방재활동시의 역할분담이라든가 현실대응력에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방재대책의 수립이나 시행에는 많은 기관이 관련되어 있고 업무면에 있어서도 방대하므로 종합적인 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㉞